|  |  |  |
| --- | --- | --- |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자원세 개혁의 구체적인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6]5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서장 및 영하회족자치구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당 중앙 및 국무원 정책결정 배치에 근거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자원세 개혁을 전면 추진한다. 효과적인 자원세 개혁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자원세 개혁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재세[2016]53호, 이하<개혁통지>가 유효하게 실시됨을 확보하고자 이에 자원세(수자원세 불포함, 하동)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자원세 과세표준에 관한 확정  자원세의 과세표준은 과세품의 매출액 또는 매출량이며, 각 세목의 징수대상은 원광석, 정광(精矿） (또는 원광석 가공품, 하동), 금괴 및 염화나트륨 초기제품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혁통지>에 첨부된 <자원세 세목세율변동표>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명칭이 열거되지 않은 기타 광산품에 대해서는 성급 인민정부가 해당 지역 주요 광산품에 대해 광산종류에 따라 세목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잔여 광산품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세목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판매된 주요 형태(예를 들어 원광석 및 정광)에 따라 징수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  1.1 매출액에 관한 인정  매출액이라 함은 납세자가 구매자에게 과세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전체대금과 가격 외 비용을 가리키며, 증치세 매출세액과 운송잡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운송잡비용이라 함은 갱구 또는 세광∙선광(가공)지에서 정류장 및 부두 또는 구매자 지정지역까지의 과세품 운송비, 건설기금 및 운송판매에 따른 하역, 창고, 항구잡비용을 가리킨다. 운송잡비용은 판매액과 별도 계산하여야 하며, 관련된 증빙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판매액과 별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자원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1.2 원광석 매출액과 정광 매출액에 관한 환산 또는 절산  원광석과 정광 간의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동일 종류의 과세품에 대한 징수대상이 정광일 경우 납세자가 원광석을 판매할 때, 원광석 판매액을 정광 판매액으로 환산하여 자원세를 납부하고, 징수대상이 원광석일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채굴한 원광석을 가공하여 정광을 판매할 때에는 정광 판매액을 원광석 판매액으로 환산하여 자원세를 납부한다. 환산비 또는 환산율은 원칙상 원광석 판매가 및 정광 판매가와 선광비율을 통해 계산하여야 하며, 원광석 판매액 및 가공단계 평균원가와 이윤을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다.  금광석은 표준금괴를 징수대상으로 하여 납세자는 금원광석, 금정광을 판매할 경우 상술한 규정과 비교 대조하여 그 판매액을 금괴판매액으로 환산하여 자원세를 납부한다.  환산비 또는 절산율은 간편하게 실행이 가능하며 공평한 합리적 원칙에 따라 성급 재세부문이 확정하고,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자원세 적용세율에 관한 확정  각 성급 인민정부는 <개혁통지>요구에 따라 제의하거나 해당 지역 자원세 적용세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세율 추산 시에는 해당 지역 자원품질, 기업부담능력 및 정리비용기금 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개혁 전후 조세평형원칙에 따라서 최근 몇 년간 기업이 납부한 자원세 및 광산자원보상비용 금액(철광석 채굴기업이 납부한 자원세 금액은 40%세액표준에 따라 추산)과 제품시장가격평균을 근거로 확정한다. 1개의 광산 종류는 원칙상 1단계 세율을 설정하고, 소수자원으로 조건적 차이가 비교적 큰 광산 종류는 다른 자원조건 및 다른 지역에 따라 2단계 세율을 설정한다.  3. 자원세 우대정책 및 관리 관련  3.1 법에 의거한 건축물, 철로 및 지하수 아래 보충채광방식을 통해 채굴한 광산자원에 대해서는 자원세를 50% 감면 징수한다.  보충채광이라 함은 채광 현장에서 채광하는 상황에 따라 갱내 또는 분층 등 공간에 폐석, 미광, 고형 폐기물, 건축 폐기물 및 충전전용 합격재료 등을 보충하여 광산품을 채굴하는 채굴방법을 가리킨다.  3.2 실제채굴연한이 15년 이상인 소진기 광산에서 채굴한 광산자원에 대해서는 자원세를 30% 감면 징수한다.  소진기 광산이라 함은 잔여 채굴가능 매장량이 기존에 설계된 채굴가능 매장량의 20%(포함)이하로 떨어지거나 또는 잔여 서비스 연한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광산이자, 채굴기업의 하부 광산을 단위로 확정한 것을 가리킨다.  3.3 저급 광산, 폐석, 미광, 고형 폐기물, 폐수 및 폐기 등 광산품에 대해서는 성급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감세 또는 면세 여부를 확정한다.  4. 기타 광산물이 섞인 광산의 면세 징수에 관한 처리  기타 광산물이 섞인 광산의 종합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납세자는 기타 광산물이 섞인 광산을 채굴 판매하고, 기타 광산물이 섞인 것과 주요 광산품 판매액을 나누어 계산할 경우 기타 광산물이 섞인 광산품에 대해서는 임시 자원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누어서 계산하지 않는 경우, 기타 광산물이 섞인 광산품은 주요 광산품의 세목과 적용세율에 따라 자원세를 과세한다.  5. 자원세 납세단계와 납세지점  자원세는 과세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스스로 사용하는 단계에서 계산하여 납부한다. 스스로 원광석을 채굴하여 정광 제품으로 가공한 경우 원광석 이송사용 시에는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정광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스스로 사용 시 자원세를 납부한다.  납세자는 스스로 채굴한 원광석을 금괴로 가공한 경우, 금괴판매 또는 스스로 사용 시에 자원세를 납부한다. 납세자는 스스로 원광석을 채굴하거나 스스로 원광석을 가공한 금정광, 조금(粗金) , 원광석 또는 금정광 및 조금 판매 시에 자원세를 납부하고, 이송사용 시에는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과세품 투자, 분배, 변제, 증여, 물물교환 등은 판매로 간주하고, 본 통지 유관규정에 따라 자원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납세자는 광산품 채굴지 또는 염전 생산지에 자원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에서 채굴 또는 생산한 과세품이며, 그 납세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성급 지방세무기관이 결정한다.  6. 기타사항  6.1 납세자는 이미 자원세를 납부한 과세품을 이용하여 한 단계 더 가공한 과세품을 판매할 경우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제품과 세금을 납부한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 가공한 과세품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납부한 제품의 구매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하며, 가공후의 과세품을 판매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제품의 구매금액을 정확히 공제하여야 한다. 나누어서 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자원세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6.2 납세자가 2016년 7월 1일 전 원광석을 채굴하거나 스스로 원광석을 채굴하여 가공한 정광을 2016년 7월 1일 후 판매할 경우,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한다. 2016년 7월 1일 전 과세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 1일 후 판매액을 수령하거나 판매증빙을 요구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한다. 2016년 7월 1일 후 판매할 정광(또는 금괴)은 그 사용될 원광(또는 금정광)이 이미 종량정액의 과세방식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하고 과세 정광(또는 금괴)과 별도로 계산한 경우에는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6.3 2016년 7월 1일 전 이미 원광석 판매량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한 미광, 폐기물, 폐수, 폐석, 폐기 등에 대해 재사용을 실행할 경우, 그 중에서 추출한 광산품은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길 바라며, 이전규정과 본 통지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 5월 9일 |  |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资源税改革具体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16〕54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地方税务局，西藏、宁夏回族自治区国家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根据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自2016年7月1日起全面推进资源税改革。为切实做好资源税改革工作，确保《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全面推进资源税改革的通知》（财税〔2016〕53号，以下简称《改革通知》）有效实施，现就资源税（不包括水资源税，下同）改革具体政策问题通知如下：  　　一、关于资源税计税依据的确定  资源税的计税依据为应税产品的销售额或销售量，各税目的征税对象包括原矿、精矿（或原矿加工品，下同）、金锭、氯化钠初级产品，具体按照《改革通知》所附《资源税税目税率幅度表》相关规定执行。对未列举名称的其他矿产品，省级人民政府可对本地区主要矿产品按矿种设定税目，对其余矿产品按类别设定税目，并按其销售的主要形态（如原矿、精矿）确定征税对象。  　　（一）关于销售额的认定。  　　销售额是指纳税人销售应税产品向购买方收取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不包括增值税销项税额和运杂费用。  　　运杂费用是指应税产品从坑口或洗选（加工）地到车站、码头或购买方指定地点的运输费用、建设基金以及随运销产生的装卸、仓储、港杂费用。运杂费用应与销售额分别核算，凡未取得相应凭据或不能与销售额分别核算的，应当一并计征资源税。  　　（二）关于原矿销售额与精矿销售额的换算或折算。  为公平原矿与精矿之间的税负，对同一种应税产品，征税对象为精矿的，纳税人销售原矿时，应将原矿销售额换算为精矿销售额缴纳资源税；征税对象为原矿的，纳税人销售自采原矿加工的精矿，应将精矿销售额折算为原矿销售额缴纳资源税。换算比或折算率原则上应通过原矿售价、精矿售价和选矿比计算，也可通过原矿销售额、加工环节平均成本和利润计算。  　　金矿以标准金锭为征税对象，纳税人销售金原矿、金精矿的，应比照上述规定将其销售额换算为金锭销售额缴纳资源税。  　　换算比或折算率应按简便可行、公平合理的原则，由省级财税部门确定，并报财政部、国家税务总局备案。  　　二、关于资源税适用税率的确定  　　各省级人民政府应当按《改革通知》要求提出或确定本地区资源税适用税率。测算具体适用税率时，要充分考虑本地区资源禀赋、企业承受能力和清理收费基金等因素，按照改革前后税费平移原则，以近几年企业缴纳资源税、矿产资源补偿费金额（铁矿石开采企业缴纳资源税金额按40%税额标准测算）和矿产品市场价格水平为依据确定。一个矿种原则上设定一档税率，少数资源条件差异较大的矿种可按不同资源条件、不同地区设定两档税率。  　　三、关于资源税优惠政策及管理  　　（一）对依法在建筑物下、铁路下、水体下通过充填开采方式采出的矿产资源，资源税减征50%。  　　充填开采是指随着回采工作面的推进，向采空区或离层带等空间充填废石、尾矿、废渣、建筑废料以及专用充填合格材料等采出矿产品的开采方法。  　　（二）对实际开采年限在15年以上的衰竭期矿山开采的矿产资源，资源税减征30%。  衰竭期矿山是指剩余可采储量下降到原设计可采储量的20%（含）以下或剩余服务年限不超过5年的矿山，以开采企业下属的单个矿山为单位确定。  　　（三）对鼓励利用的低品位矿、废石、尾矿、废渣、废水、废气等提取的矿产品，由省级人民政府根据实际情况确定是否给予减税或免税。  　　四、关于共伴生矿产的征免税的处理  　　为促进共伴生矿的综合利用，纳税人开采销售共伴生矿，共伴生矿与主矿产品销售额分开核算的，对共伴生矿暂不计征资源税；没有分开核算的，共伴生矿按主矿产品的税目和适用税率计征资源税。财政部、国家税务总局另有规定的，从其规定。  　　五、关于资源税纳税环节和纳税地点  资源税在应税产品的销售或自用环节计算缴纳。以自采原矿加工精矿产品的，在原矿移送使用时不缴纳资源税，在精矿销售或自用时缴纳资源税。  　　纳税人以自采原矿加工金锭的，在金锭销售或自用时缴纳资源税。纳税人销售自采原矿或者自采原矿加工的金精矿、粗金，在原矿或者金精矿、粗金销售时缴纳资源税，在移送使用时不缴纳资源税。  　　以应税产品投资、分配、抵债、赠与、以物易物等，视同销售，依照本通知有关规定计算缴纳资源税。  　　纳税人应当向矿产品的开采地或盐的生产地缴纳资源税。纳税人在本省、自治区、直辖市范围开采或者生产应税产品，其纳税地点需要调整的，由省级地方税务机关决定。  　　六、其他事项  　　（一）纳税人用已纳资源税的应税产品进一步加工应税产品销售的，不再缴纳资源税。纳税人以未税产品和已税产品混合销售或者混合加工为应税产品销售的，应当准确核算已税产品的购进金额，在计算加工后的应税产品销售额时，准予扣减已税产品的购进金额；未分别核算的，一并计算缴纳资源税。    （二）纳税人在2016年7月1日前开采原矿或以自采原矿加工精矿，在2016年7月1日后销售的，按本通知规定缴纳资源税；2016年7月1日前签订的销售应税产品的合同，在2016年7月1日后收讫销售款或者取得索取销售款凭据的，按本通知规定缴纳资源税；在2016年7月1日后销售的精矿（或金锭），其所用原矿（或金精矿）如已按从量定额的计征方式缴纳了资源税，并与应税精矿（或金锭）分别核算的，不再缴纳资源税。  　　（三）对在2016年7月1日前已按原矿销量缴纳过资源税的尾矿、废渣、废水、废石、废气等实行再利用，从中提取的矿产品，不再缴纳资源税。  　　上述规定，请遵照执行。此前规定与本通知不一致的，一律以本通知为准。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2016年5月9日 |